



제 429회 국회 (임시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전협의를 완료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생략〉

■ 박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477호)

2025.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검토의견	2
1. 사전협의를 완료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과업심의회 심의 생략	2
※ 참고자료 1	8
※ 참고자료 2	1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정훈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8. 28.

다. 회부연월일 : 2025. 8. 29.

II. 제안이유

현행법 제50조는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경우, 과업내용의 확정 및 변경에 대해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제47조에서는 사업 착수 전 ‘사전협의’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무에서는 동일한 과업내용에 대해 사전협의와 과업심의가 중복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 발주 전 행정절차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불필요한 행정적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음.

특히 사업 발주 지연은 정부의 조기 재정집행 기조와도 배치되며, 중소 SW기업에게는 계약 착수 지연, 인건비 부담 증가, 자금 유동성 악화 등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오히려 소프트웨어 산업의 진흥 취지를 훼손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제47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간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며,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산업 생태계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1호).

Ⅲ. 검토의견

1. 사전협의를 완료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생략

가. 개정안 요지

- 국가기관등의 장이 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사항에 제47조에 따라 사전협의를 한 경우를 제외함(안 제50조제1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 ----- ----- ----- ----- ----- -.
1. 과업내용의 <u>확정</u>	1. ----- <u>확정(제47조에 따라 사전협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50조¹⁾에 따르면 국가기관등²⁾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 시 과업내용의 확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두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현행법 제47조³⁾에 따르면 국가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67조⁴⁾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인 소프트웨어사업 등을 추진하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수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및 개최 요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④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를 우대할 수 있다.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의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인 소프트웨어사업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협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 작성수준이 제44조제1항·제2항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산정된 사업기간이 제45조제1항에 부합하는지 여부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중앙사무관장기관”이란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법원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

는 경우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고, 사전협의를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 작성수준 부합 여부 등의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함.

○ 개정안은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경우 동일한 과업내용에 대해 사전협의를 과업심의가 중복으로 이루어져 사업 발주 전 행정절차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특히 사업발주 지연은 중소 SW기업에 계약착수 지연, 인건비 증가, 자금유동성 악화 등의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제47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함으로써 중소 SW기업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47조의 사전협의를 제50조의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제도의 목적 및 취지 측면에서 비교해보면,

- 사전협의를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른 다른 기관과의 상호연계 또는 공동이용과 관련한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하

4)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의 상호연계 또는 공동이용과 관련한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추진하는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사전협의를 대상사업,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는 제도임⁵⁾.

-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과업내용을 명확히 하여 SW기업에게 과업내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즉 잦은 과업변경 등 불합리한 발주관행으로 SW기업의 수익 저하, 개발자의 근로환경 악화 등 SW산업의 발전이 저해됨에 따라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심의결과를 계약금액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음.

○ 다음으로 주체를 살펴보면,

- 사전협의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4호⁶⁾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 즉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 과업심의위원회는 발주기관이 위원을 임명·위촉하여 구성⁷⁾한 후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과업내용 등을 확정함.

5)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조제6호에서는 “사전협의”를 영 제82조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과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표준 등 관련 제도의 준수여부 및 중복여부, 과업 요구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을 검토하고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음.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사전협의 대상사업)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다른 중앙행정기관등과 상호연계하거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6)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중앙사무관장기관”이란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법원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

7) SW분야 교수, SW업무 관련 5급이상 공무원, SW기술자 등을 임명·위촉하며,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함(「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 마지막으로 협의 및 심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 사전협의를 협의기관의 장이 중복투자, 연계 추진, 공동이용, 성과측정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추진, 보완추진, 보완후협의, 추진보류’로 결정·권고함⁸⁾.
 - 과업심의위원회는 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제외사유 적용,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결과 등 요구사항 전반을 검토함⁹⁾.
- 종합해보면, 사전협의를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목적과 취지, 주체, 내용 등의 측면에서 성격이 다른 제도로 사전협의를 완료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한편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적용 대상이 일련의 절차나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경우 어떤 특정 단계나 시점의 사항을 적용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을 때는 적용례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개정안에 적용례를 두어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SW사업에 참여

8) 참고자료 1 참조

9) 참고자료 2 참조

하는 중소 SW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과업확정 심의 생략은 오히려 SW기업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개정안에 ‘신중 검토’ 의견을 제출하였음.

- 과업확정 심의를 생략할 경우, 발주기관이 작성한 과업내용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검토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부실한 과업내용으로 사업이 발주되거나 사후 과업내용 보완으로 인한 발주 지연에 따른 SW기업의 피해, 공공SW 품질저하로 인한 사용자와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임.

○ 또한 행정안전부는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사전협의에서 검토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절차 등도 상이하므로 개정안에 대해 ‘현행 유지’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228

※ 참고자료 1: 사전협의 관련 법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의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인 소프트웨어사업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협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 작성수준이 제44조제1항·제2항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산정된 사업기간이 제45조제1항에 부합하는지 여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0조(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대상)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중앙사무관장기관”이란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법원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

제67조(사전협의)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의 상호연계 또는 공동이용과 관련한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추진하는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사전협의의 대상사업,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

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사전협의 대상사업)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다른 중앙행정기관등과 상호연계하거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삭제
2. 삭제
3. 다른 법령에 따라 중복성 사전검토를 완료한 사업
4. 그 밖에 사업금액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사전협의"란 영 제82조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 및 지방자치단체등과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표준 등 관련 제도의 준수여부 및 중복여부, 과업 요구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을 검토하고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14조(사전협의 검토절차) ① 협의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다만, 영 제8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제5호에 대하여 검토한다.

1. 사업계획의 중복성 등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중복투자에 관한 사항
2. 다른 정보화사업 또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추진 및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 또는 정보시스템의 성과측정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적용되는 신기술 관련 과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 산정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용소프트웨어의 존재 여부 등 민간서비스 침해에 관한 사항
7. 클라우드 이용여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복성, 공동이용 및 관련 표준·제도의 준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사전협의 검토결과) ①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 추진으로 결정하며, 신청기관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가 반영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타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에서 개발하였거나 개발할 예정인 정보시스템과

중복성이 없는 경우

2. 타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행정정보시스템과 중복성이 있으나, 기술적 제약사항 등으로 소프트웨어의 공동활용이 불가하거나, 공동활용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3. 해당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경우

4. 기타 사업을 추진하기에 부적절한 다른 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②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해당 사업에 대하여 보완추진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신청기관의 장은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삭제

2.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이 관련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지만 개발 또는 확산 완료 시점을 예측할 수 없거나, 개발 또는 확산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개별 시스템 개발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삭제

4. 타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에서 개발한 콘텐츠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공동활용이 가능하여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5. 타 행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또는 관련 표준이나 제도의 준수가 필요한 경우

6. 기타 비용절감 또는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일정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

③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발주하기 전 이행하여야 할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해당 사업에 대하여 보완후협의를 권고하여야 하며, 신청기관의 장은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고 협의기관의 장으로부터 이행여부 점검 완료통보를 받은 후 사업을 발주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이 개발하여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정보시스템과 일부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2. 타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이 개발한 정보시스템과 중복되고, 해당 소프트웨어의 일부 공동활용이 가능하여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3.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이 개발 또는 확산할 예정인 정보시스템과 일부내용이 중복되거나 공동활용이 가능하여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4. 기타 비용절감을 위해 사업계획 수정 또는 기관 협의 등이 필요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여 해당 사업에 대해 추진보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추진 중단, 추진보류 권고의 원인 해소, 사업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이 개발하여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정보시스템과 상당부분 중복되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이 관련 정보시스템을 개발 또는 확산할 예정으로서 개발 또는 확산 완료일정이 제시되어 있고,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개별 시스템 개발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 소프트웨어와 중복되는 경우. 단, 우수 소프트웨어 도입이 곤란한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진 또는 보완추진
4. 기타 국가 정책에 반하는 등 사업추진을 보류시켜야 할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참고자료 2: 과업심의위원회 관련 법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수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소프트웨어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6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의 심

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포함한다)

2. 과업내용 변경

3.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② 과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수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 및 조치계획을 그 회의 개최를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심의·의결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를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와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등 과업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제외)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구매하는 제7조제3항의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구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40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외사유를 적용하여 발주 또는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국회, 감사원,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 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에게 미리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